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56
----------	-------

발의연월일 : 2026. 7. 24.

발 의 자 : 김정호 · 허종식 · 박 정
이연희 · 임미애 · 서왕진
박용갑 · 이수진 · 전진숙
윤후덕 · 허성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가능한 총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지원 3법”의 개정으로 부모는 자녀별로 확대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연속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고용보험법상 기준기간 연장 상한인 3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에 따른 장기간 육아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기 중증

질병·부상 휴직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제3호·제4호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을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기간(4년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4년 6개월로 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병 또는 부상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기간(4년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4년 6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급여 수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생 략)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 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 기간으로 한다.	②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2명 이상 의 자녀에 대한 임신 · 출산 · 육아에 따른 휴직을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가산한 기간(4년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4년 6개월로 한다)
<u><신 설></u>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증질병 또는
부상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
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
었던 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기간
(4년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4년 6개월로 한다)